

卷 頭 辭

우리 大學이 신지 어언 20餘 해가 거듭되었다. 그 동안 여러 教授들이 이 大學을 거쳐 혹은 官界로, 혹은 다른 大學으로 나가셨으나, 停年으로 退職하신 분은 鄭光鉉 博士님이 처음 이시다.

돌이켜 보면, 鄭光鉉 教授께서는 1950年 서울大學校法科大學에 赴任하신 이래 1952년부터 10年 동안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長職을 맡으신 일도 있으나, 대부분의 時間을 출근 우리 法科大學의 發展과 後進의 養成에 精進하셔서 우리나라 法律文化의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셨음은 多言을 要치 않는다. 鄭光鉉 教授께서는 1962年의 「教育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依據 60歲로서 停年退職하셨다가 1964年에 다시 復職, 今年 8月 31日字로 教育公務員法 第50條 第1項에 의하여 停年退職하시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後進을 위하여 많은 寄與를 하실 수 있는 鄭 教授께서 停年으로 退職하신다는 것은 서글픈 마음 禁할 수 없으나, 多幸스럽게도 名譽教授로서 계속 우리 學校에 머무르시게 되었음은 敬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鄭 教授께서는 특히 우리나라 家族法學界의 泰斗로서 지난 번 「韓國家族法研究」라는 大著書를 서울大學校出版部에서 發刊하여 우리나라 家族法 研究에 金字塔을 쌓으셨으며, 이것은 우리들 後進에게는 커다란 龜鑑이 될 것이다.

끝으로 鄭光鉉 博士님의 앞날에 神의 加護 있으시기를 祈願하면서 이 조그만한 法學誌를 삼가 博士님께 바칩니다.

1967年 12月 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 長 李 漢 基